

긴급동의

심의결과 원안대로가결

의안번호	회의차수	회의일자	제 의 자
48	12	1980. 6. 5	총재 신병현

의안 "한국은행 여신업무이월" 일부 개정

의결사항 / 한국은행의 여신업무이월을 별안과 같이
일부 개정한다.

2. 실시일자 ; 1980. 6. 5.

3. 경과조치

가. 1980. 6. 4이전에 금융기관이 이미

취급한 대출금중 상업부채에 대한 채

활신은 어음기일까지, 수출어음, 외화표

시공급어음, 농수산물수출준비어음 및

기타어음중 지방산업육성어음을 담보로

취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동 담보어음

기일까지 종전 이월을 각각 적용한다
 나, 수출어음, 외화도시공급어음, 농수산물
 수출준비어음 및 농업, 수산업, 외환사
 업어음을 담보로 하는 대출금에 대하
 여는 1980. 12. 31 까지 다음의 기한
 을 각각 적용한다.

1) 수출어음 및 외화도시공급어음

- (가) 원차기간 135일 이내분 : 연 7.0%
- (나) "수출금증가증" 제 6조 및 "외화
 도시공급금증가증" 제 4조에 의한
 90일 초과 원차기간 해당품목의
 당해 품목별 소정 원차기간 이내분
 : 연 7.0%

(다)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외화문서 전설
공사로서 용차기간 180일 초과
1년 이내분 및 선박 또는 철도
차량으로서 용차기간 180일 초과
270일 이내분 ; 연 15.0 %

(2) 농수산물 수출준비어음

(가) 지정 제2조 제2항 "가" 호 대출
어음 ; 연 7.0 %

(나) 지정 제2조 제2항 "나" 호
대출어음 ; 연 7.0 %

(3) 농업, 수산업, 회원사업어음

(농협 및 수협취급분) ; 연 7.0 %

다만, 1980.6.4 이전에 이미 취급한

수출어음, 외화포시공급어음, 농수산물
수출준비어음 및 농업, 수산업, 회원사
업어음 대출로서 1980. 7. 1 이후에
어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1980 7. 1
부터 어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
위의 이율을 적용 한다.

다, 1980. 1. 1 이전에 이미 취급한 수
출어음, 외화포시공급어음, 농수산물 수
출준비어음 및 주요원자재수입어음을
담보로 한 대출금에 대하여는 담보어
음기일까지, 농업, 수산업, 회원사업
어음, 근수산업어음 및 기타어음중

999 지방산업책성어음을 담보로 한 대출금에

대하여는 등 담보어음에 관하여 증명

기관 대출의 당초 약정기한까지 1986

1. // 이천 이율을 각각 적용한다

제외관계
법구조항

한국은행법 제 72 조

제외처지

금융기관 여신금리의 원부원하를 유도하여

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물가상

승압력을 완화하는 동시에 수출경쟁력의 강

화를 도모하고자

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

참고사항

1. 제외관계 법구조항

한국은행법 제 72 조

1)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 69 조에 규정

된 여신업무에 관한 이율은 적용한다

(2) 금융통화위원회는 제 89호에 기
정된 법위내에서 여신업무에 관한 기
타 표준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

2. 첨부물

가, 1980. 1. 12 제 2차 본 위원회 의결 내용

나, 1980. 2. 21 제 5차 본 위원회 의결 내용

다, 한국은행 여신업무이행 추이

라, 한국은행 대출금 추이

마, 금융기관 여신업무 이행 원부개정(안)

"한국은행 여신업무 이율" 일부 개정 (안)

구 분		현 행	개 정 (안)
재할인	상 업 어 음	우대적격업체 발행, 양도배서, 인수어음 : 연 20.5% 기타업체 발행, 양도배서, 인수어음 : 연 21.0%	우대적격업체 발행, 양도배서, 인수어음 : 연 19.5% 기타업체 발행, 양도배서, 인수어음 : 연 20.0%
	수 출 어 음	① 용차기간 135일 이내분 ; 연 10.0% ② "수출금융규정" 제6조 및 "외화포시 공급증서규정" 제4조에 의한 90일 초과 용차기간 해당품목의 당해품목별 소정용차기간 이내분 ; 연 10.0% ③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외화포시 건설공사로서 용차기간 90일 초과 1년 이내분 및 선박 또는 철도 차량으로서 용차기간 180일 초과 270일 이내분 ; 연 12.0% ④ 선 ②, ③항 이외의 용차기간 135일 초과분 ; 연 21.0%	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선 ② ③항 이외의 용차기간 135일 초과분 ; 연 20.0%
대 손	외 화 포 시 공 급 어 음		

구분	행	개정 (안)
당	㉔ 대응수출 또는 공급불리행분; 연 25.0% 이차정수시기에 관하여는 한국은행 총재가 따로 정할 수 있다.	㉔ 대응수출 또는 공급불리행분; 연 24.0% 이차정수시기에 관하여는 한국은행 총재가 따로 정할 수 있다.
보 대 금	주정 제2조 제2항 "가"호 대출어음; 연 10.0% 주정 제2조 제2항 "나"호 대출어음; 연 10.0% 다만, 대응수출 신용장 수령 불리행분에 대하여는 연 25.0% 이차정수시기에 관하여는 한국은행 총재가 따로 정할 수 있다.	주정 제2조 제2항 "가"호 대출어음; 연 10.0% 주정 제2조 제2항 "나"호 대출어음; 연 10.0% 다만, 대응수출 신용장 수령 불리행분에 대하여는 연 24.0% 이차정수시기에 관하여는 한국은행 총재 가 따로 정할 수 있다.
농업, 수산업, 회원사립어음 (농협 및 수협 취급분)	연 10.0% 1003	(현행과 같음)

구분	행	계정 (단)
상 하 계 총	연 18.0 %	(원행과 같음)
주요원자재 수입어음	연 18.0 %	(원행과 같음)
기타어음	연 21.0 % 다만,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용자 대상은 연 21.0 %	연 26.0 % 다만,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용자 대상은 연 20.0 %

1004